

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

□ 개정이유

- 여성회관 인력보강을 위한 신규정원 승인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가.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규정(안 제2조)

- 총 정 원 : 773명 → 780명 (증 7명)
 - 집행기관 : 755명 → 762명 (증 7명)
 - 의회사무기구 : 18명 → 18명

나. 부칙중 정원의 관한 경과조치 개정(안, 부칙 제2조)

- [표1] 의 정원총수 821명 → 828명
 - 집행기관의 정원 803명 → 810명
- [표2] 의 정원총수 775명 → 782명
 - 집행기관의 정원 757명 → 764명

※ 여성회관 정원 승인현황

계	행정 6급	행정 7급	사회복지 7급	행정 8급
7명	1명	2명	2명	2명

□ 검토의견

가. 법령적합성

지방자치법

제103조 (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) ①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,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- 동 개정조례안은 여성회관의 증설에 따라 여성회관 인력보강을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는 것임.
-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 이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아 법령적합성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됨.

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및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

제14조 (표준정원의 책정)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 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시·도지사를 거쳐야 하며 시·도지사는 정원책정의 적정여부 등 그 검토결과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.

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3월 또는 9월에 하여야 한다.

나. 내용타당성

- 동 개정조례안에 의하면 여성회관의 운영을 위해 7명의 정원이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이 됨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은 총 762명이 됨.
- 타 지방자치단체 여성회관과 정원을 비교해 보면 파주시 여성회관의 정원이 과다하다고 할 수 없음.(표-1).

※ 여성회관 대비표 <표.1>

구 분	파주시 여성회관	김포시 여성회관	평택시 여성회관	안산시 여성회관	광명시 여성회관	고양시 여성회관
연면적	4,137㎡ (1,251평)	4,008㎡ (1,212평)	5,236㎡ (1,583평)	4,291㎡ (1,298평)	4,914㎡ (1,486평)	6,735㎡ (2,041평)
규 모	지하1층 지상3층	지하1층 지상4층	지하1층 지상5층	지하1층 지상4층	지하2층 지상4층	지하1층 지상3층
기구수	-	2계 1실	3계	관장 관리계	2계 1실	2계 1실
정 원	7명승인	12명	31명	15명	15명	15명

- 다만, 행정자치부에 여성회관 기구 및 정원 승인 요청시에 비하여 3명이 감축되어 승인이 됨에 따라 기존의 여성회관 기구 및 인력 운영 계획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 함으로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됨. (표-2, 표-3)

※ 정원 및 기구표

○ 정원 승인요청 및 승인사항 <표.2>

구 분	일 반 직						
	소계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
승인요청	10	-	1명 (행·별)	3명 (행2, 행·별1)	4명 (행2, 별정)	2명 (행2)	-
승인사항	7			1명 (행1)	4명 (행2, 사회복지2)	2명 (행2)	

○ 기구 (1관 2팀1 실 - 10명 승인시 기구 및 인력운영계획임)

- 여성회관장(5급) : 여성회관 업무 총괄
- 관리팀 : 행정6급, 행정7급, 행정8급 각각 1명
- 운영팀 : 행정6급, 행정7급, 행정8급 각각 1명
- 상담실 : 행정·별정 1명, 별정7급 2명